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확인 의무 부과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12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확인 의무 부과(안 제1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1.

다. 회 부 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연예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 확인 의무 부과(안 제1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임원·직원 및 관련종사자(이하 ‘대중문화예술인등’이라 함)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용·알선·강요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도록 알선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리자로서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대중문화예술인, 임원·직원 및 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도록 알선 및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용·알선 및 강요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의 이용·알선 및 강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2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이용·알선 및 강요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제39조의2(벌칙)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도록 알선 및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	제42조(양벌규정) ----- ----- ----- -----제39조, 제39조의2 또

현행	개정안
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 ----- -----. ----- ----- -----.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인¹⁾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부터 주사 시술 등 의료행위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전반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과 아울러,²⁾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상 대중문화예술인뿐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해당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음.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과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과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2) 「연예계 ‘주사이모 게이트’...무면허·불법유통·병원의 투약 다 걸렸다[10문10답]」, 문화일보, 2025. 12. 16.; 「연예계 강타한 ‘주사이모’...무면허 방문진료, 마약류에 무방비」, 동아일보, 2025. 12. 19.

이에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³⁾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한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참고로, 현행 「의료법」⁴⁾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알선 및 강요 행위는 이미 「의료법」에서 금지·처벌되고 있어 별도의 별칙을 신설할 경우 규제 중복의 우려가 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적 관리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미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아울러, 의료행위 여부나 의료인의 면허 취득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업계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1

유관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 (‘26.1.6.)	• (현행 유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이미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에 별도로 명시할 이유가 없음. 해당 문제의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을 기획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나친 감시·관리 역할 부여로서 별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책임 부여에 해당함
한국방송 협회 (‘26.1.15.)	• (현행 유지) 무면허 의료행위 알선 및 강요는 이미 「의료법」에서 금지·처벌되고 있어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함. 개정안 제16조의2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임에도 행위 주체를 ‘누구든지’로 설정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26.1.16.)	• (현행 유지)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알선 및 강요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입법은 불필요함. 확인 의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간섭하게 하는 행위로 인권침해로 비칠 수 있고, 법적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음
한국음악 콘텐츠협회 (‘26.1.16.)	• (현행 유지)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알선 및 강요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고, 대중문화예술 산업군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의료 이용 내역은 민감 개인 정보이자 사생활 영역으로서 기획업자에 확인할 권한이 없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상호신뢰 훼손 우려